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9 선고 2015가단5364766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

피고A

변론 종결2016. 8. 19.

판결 선고2016. 9. 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B 사이에 2014. 12. 12. 체결된
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. 12. 12. 접수
제532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○ 원고는 2012. 11. 2. B과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의 보증기한은 2013. 11. 1.에서 2014. 11. 3.로 다시 2015. 11. 3.로 변경되었다.

○ B은 2015. 8. 1.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, 원고는 2015. 11. 11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96,483,3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○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, B은 2016. 7. 1. 그 청구를 인락하였고 그 청구의 내용은 'B은 원고에게 97,141,421원 및 그중 96,483,306원에 대하여 2015. 11. 11.부터 2016. 1. 4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것이다.

○ B은 2014. 12. 12.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계약'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 이 사건 근저당등기 이전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2013. 11. 15.자 채권최고액 33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

[인정근거 : 갑 제1 ~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근저당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대부업자로서 남편의 지역후배인 C의 소개를 받아 B에게 27,000,000원을 대부하면서 채권최고액 40,000,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마쳤을 뿐,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선의의 항변을 한다.

3. 판단

갑 제10 ~ 12호증, 을 제1 ~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인다.

○ 피고는 'D'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데, 2014. 12. 12. B에게 27,000,000원을 이자율 월 2.78%, 변제기한 2015. 6. 12.까지로 정하여 대부한다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(을 제2호증) 및 대출금수령영수증(을제3호증)이 작성되어 있다.

○ 피고는 2014. 12. 12. B의 계좌로 20,000,000원을 송금하였고(을 제4호증의 1), B의 요청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7,000,000원을 피고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료(을제 4호증의 2 내지 8)가 제출되었다.

○ B은 2015. 1. 13. 이후 2015. 10. 14.까지 매월 위 27,000,000원의 이자에 상당한 750,000씩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(을 제5호증의 1 내지 10).

○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등기 이전부터 B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.

○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채권최고액 40,000,000원은 위 27,000,000원에 대한 대부업자들의 통상적인 채권최고액 비율인 150%에 유사한 금액이다.

○ 이 사건 근저당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0,000,000원 정도라는 것으로(갑 제12호증), 위 금액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33,000,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대부하였다는 27,000,000원과 동일한 금액이다.

○ 이 사건 근저당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B의 급박한 채무상태를 알 수 있는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.

○ B의 신용보증사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로부터 7개월 여가 지난 후에 발생하였고, B이 운영하던 (주)E의 사업장 폐쇄도 이 사건 근저당등기 이후인 2015. 2.경이었으며, B의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연체시기도 2015. 6.경 이후이다.

○ 피고는 B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이평균

별지